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함(제23조, 제23조의2 및 23조의3 삭제 및 안 제37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화 실)